

|              |                          |
|--------------|--------------------------|
| 의안번호         | 제423호                    |
| 의 결<br>연 월 일 | 2012년 12월 20일<br>(제316회) |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

|       |               |
|-------|---------------|
| 발 의 자 | 이광희 의원외 8명    |
| 발의연월일 | 2012년 11월 12일 |

#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

##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423 |
|----------|-----|

발의연월일 : 2012년 11월 12일

발의자 : 이광희 의원

장병학, 박상필, 임헌경,  
최미애, 전응천, 최진섭,  
하재성, 노광기 의원

### 1. 제정이유

도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에 이르면서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적 소외와 유해환경 노출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학업중단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함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안 제3조)
- 나. 학업중단청소년 실태분석 및 정책개발, 교육 및 자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안 제4조)
- 다.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지원운영위원회 설치를 명시(안 제5조)
- 라. 청소년 지원 단체 또는 기관이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6조)

마.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교육청, 대안 교육기관,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함을 명시 (안 제8조).

###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5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예정일 : 2012. 10 . 18. ~ 2012. 11. 6.(20일간)

(2) 규제사항 : 해당없음

##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청소년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계발위주 등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을 의미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자립 지원에 관심을 갖고 학업중단청소년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업중단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청소년 교육 및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업중단청소년 실태분석 및 정책개발 사업
  3. 학업중단청소년 전문상담활동 강화 사업
  4. 학업중단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5. 학업중단청소년 자활지원 사업
  6.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학업중단청소년지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지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사업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관련기관·단체 예산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지원 단체 또는 기관이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경찰청,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 1. 29>

1. 삭제<2004. 1. 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